

# 신원보증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피보증 외국인	성	명	漢字
	생년월일		성별 [ ]남 [ ]여
	국적		여권번호
	대한민국 주소		전화번호
	체류목적		

신원보증인	<b>가. 인적사항</b>		
	성명	漢字	
	국적	성별 [ ]남 [ ]여	
	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	
	주소		
	피보증인과의 관계		
	근무처	직위	
	근무처 주소	비고	
	<b>나. 보증기간</b> (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 년으로 한다)		
	<b>다. 보증내용</b>		
(1)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.			
(2)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.			
(3)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.			

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90 조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. 또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7 조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원보증인

(서명 또는 인)